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318 |
|----------|------|

제안연월일 : 2024년 12월 19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 고시(행정안전부, 2024. 8. 1.)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3조제1항제6호자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자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 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 다.</p> <p>1. ~ 5. (생 략)</p> <p>6. 보건복지위원회 가. ~ 바. (생 략) 사.·아. 삭 제 <u>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 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u></p> <p>7. ~ 11. (생 략)</p> <p>② (생 략)</p> | <p>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7.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